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재배치 기관 모집 공고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연구기관이 보유중인 유휴·저활용장비를 기관내·외부의 공동활용 집적시설로 이전·재배치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9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기관에서 보유 중인 유휴·저활용장비를 기관 내·외부 공동활용 집적시설로 이전·재배치함으로써 공동활용 서비스 활성화 및 장비 활용률 제고

□ 지원 개요

- 장비집적기관간 맞춤형 이전재배치 : 지역 거점 보유기관 간 이전·재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테크노파크(18개소, 이하 “TP”)간, 국(공)립대학 공동실험실습관(28개소, 이하 “공실관”)간, 테크노파크와 국(공)립대학 공실관 간 장비 이전·재배치
 - 대상장비 : 국가연구개발예산으로 구입한 TP, 공실관 보유 유휴·저활용장비 일체
 - ※ 이전대상장비를 기관들끼리 사전에 매칭하여 신청 후 선정평가
- 내부 이전재배치를 통한 장비집적화 : 기관내부의 공동활용서비스 시설로 이전·재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대학 및 국공립(연)의 내부 공동활용서비스 시설로 이전·재배치
 - 대상장비 : 정부연구개발예산으로 구입한 연구장비 일체
 -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여 구축한 산업기술개발장비 포함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규모 : 장비이전에 소요되는 경비로 장비 당 취득가의 10%이내에서 4천만원까지 지원
 - ※ 추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장비이전심의회”의 심사 후 장비 취득가의 20%범위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예산범위내 지원)
- 지원항목
 - (장비이전비) 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 (장비교육비)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 ※ 장비수리비 및 장비교육비는 선택 사항이며, 필수적인 부품비용은 수리비에 포함 가능

- 지원조건 : ① 지원대상 장비는 반드시 공동활용 집적시설로 이전하여 ZEUS 장비 예약서비스에서 ‘실시간 예약장비’로 의무등록하고 공동활용 서비스 실시
- ② 지원대상 장비는 ZEUS에서 실시간 활용실적을 등록하고, 3년간 장비활용실적보고서 제출

□ 추진절차



* 장비이전심의는 매월 말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수요가 많거나 시급성이 있을 경우 수시 개최

2. 신청 자격

□ 신청자격

- 맞춤형 이전재배치 : 테크노파크, 국(공)립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 내부 이전재배치 : 대학, 국·공립연구소

※ 참여제한 :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출연(연)은 별도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② 신청기관 또는 신청기관의 장이 공고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신청 방법

□ 신청 요령

- 장비집적기관간 맞춤형 이전재배치
 - 제출서류 : 맞춤형 이전재배치 신청서 1부
 - 신청기간 : 2016년 9월 5일 ~ 9월 23일, 18:00까지
 - 신청요령 : ① 장비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상태를 직접 확인 후 장비 받는 기관이 장비 주는 기관과 협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NFEC에 제출
② 신청서는 장비 주는 기관과 장비 받는 기관 양측의 날인이 모두 있어야 인정
③ 신청서는 장비이전비용에 관한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복수 견적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서술하여 제출)
- 내부 이전재배치를 통한 장비집적화
 - 제출서류 : 내부 이전재배치 계획서 1부
 - ※ 대학과 동일 대학의 산학협력단간 이전·재배치와 캠퍼스 간 이전·재배치는 지원범위에 포함
 - 신청기간 : 2016년 9월 5일 ~ 10월 17일, 18:00까지
 - 신청요령 : 계획서는 장비이전비용에 관한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복수 견적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서술하여 제출)
- 제출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담당자 e-mail :market@nfec.go.kr)

□ 참고 사항

- 신청접수 이후 제출서류는 수정이 불가하며, 장비이전심의에서 필요 시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예정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따름

□ 문의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042-865-3962, market@nfec.go.kr)

4.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법」의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등의 규정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 8절 처분”

5. 평가방법

[장비집적기관간 맞춤형 이전·재배치]

- 맞춤형 이전·재배치 평가지표 : 장비이전심의위원회 평가지표(안)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연구개발 활동과의 부합성	· 신청자의 주요 연구실적(논문, 저서, 특허, 수행연구과제 등) 및 장비 운영 경력(운영자격증, 운용교육경력, 장비운용 년수 등) · 신청기관 고유 연구분야와의 적합성 · 기존 보유장비와의 중복성 및 연계성	15
설치기관의 적정성	· 연구장비 운영비 및 운영인력 보유 · 연구장비 설치 공간 확보 · 동일 또는 유사장비 운영 경험	15
이전계획의 적정성	· 장비 상태 및 이력확인 여부 및 충실성 · 이전비용의 적정성 및 견적서 신뢰도	30
활용계획의 우수성	· 장비 활용 계획의 타당성(활용예상 실적) · 장비활용도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의 합리성	20
공동활용 계획의 적절성	·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여부 · 공동활용 추진 방안 및 계획 (활용건수, 인력운영)	20
합 계		100

[내부 이전·재배치를 통한 장비집적화]

※ 서류검토 시 장비 견적서 미제출, 신청서 및 계획서에 기관장 직인날인이 없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의 평가표와 장비별 세부 심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이전 지원금액을 최종 결정

○ 기관 내부 이전·재배치 심의 평가지표(안)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이전기관의 적정성	· 기관의 연구역량 · 기존 연구장비 보유 현황 및 유휴·저활용장비 관리 실태 · 직전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 점수	20
집적시설 및 공동활용시스템	· 집적 시설 및 공동활용 시스템 보유 여부 · 집적시설의 연구장비 운영비 보유 여부 · 집적시설의 장비운영 인력 보유 여부 · 연구장비 설치를 위한 충분한 공간 및 환경 구축 여부 · 장비활용도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의 합리성	30
이전계획의 합리성	· 유휴 이전 대상 장비 비율 · 이력확인 여부 및 충실성 · 이전비용의 적정성 및 견적서 신뢰도	35
활용계획의 우수성	· 장비 활용 계획의 타당성(활용예상 실적) · 공동활용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적절성	15
합 계		100

※ 정량평가 점수는 기관 당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계산

○ 기관 내부 이전·재배치 장비별 세부 심의 평가표

[기관명 : 0000]

연번	NTIS 등록번호	장비명	모델명	취득 년도	취득가 (천원)	요청액 (천원)	최종산정액 (천원)	선정/탈락	사유
1									
2									
...									
10									

- [붙임] 1. 유휴·저활용장비 맞춤형 이전재배치 신청서 양식 1부
2. 유휴저활용장비 내부 이전재배치 계획서 양식 1부